

위법계약해지 요구신청서

BNK 투자증권

■ 신청인 인적사항

계좌번호		계좌명	
주소	()		
반환신청 계좌번호	금융기관명	계좌번호 (본인명의계좌 기재)	

※ 반환신청계좌번호가 은행이체약정 미등록계좌인 경우 은행이체약정 신청 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고객의 계약해지 사유

계약해지대상 상품명	
계약체결일	
투자성 상품	<input type="checkbox"/> 수수료 납부일 :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약서류 수령일 :
대출성 상품	<input type="checkbox"/> 대출금 지급일 :
계약해지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7③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8②)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명의무 위반 (금소법 §19①, ③)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공정영업행위 (금소법 §20①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권유금지 위반 (금소법 §21)

■ 계약해지 사유의 근거

증빙자료	
참고자료	

■ 고객 확인사항

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“확인함” 자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위법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며, 위 확인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밝혀질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.	확인함
---	-----

※ 본 신청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고객이 회사와 체결한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.
 ※ 당사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제2항에 따라 “정당한 사유”가 있는 경우 고객님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권의
 주요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: _____ (인)